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78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59	이춘석	2025.3.21.	2025.8.18.
	2216395	김남희	2026.1.28.	2026.3.10.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4. 28.)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4. 29.)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

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다수의 사회보장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재정 여건, 지역별 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규모나 재원 부담 방식과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심의·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에 ‘지역복지(「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

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포함),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제2호 다목).

법률 제 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나. (생략) <u>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 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지방자치법」 제182 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 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을 포함한다)</u> 라.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라. (생략) ④ ~ ⑨ (생략)	